

## 전기용품안전인증 Q & A

우리나라의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은 1974년 1월 4일자로 공포되어 30년이 넘게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크고 작은 개정이 여러번 있었고 2000년 7월 1일자로 형식승인이 안전인증으로 바뀌는 등 대폭 개정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업체에서 궁금한 점을 질의한 것을 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과에서 응답한 내용중 꼭 숙지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 질의와 응답을 여기에 게재하오니 전기용품제조·수입업체의 많은 참조가 있기를 바랍니다.  
(편집자주)

**Q** 당사의 NEP인증기간이 2006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었으나 연기신청이 가능한 것을 몰라 이제야 신청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담당자와 통화한 결과 만료 3개월 전에 해야 한다고 하는데 연장이 전혀 불가능한 것인지?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A**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제20조 에 따르면 신제품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있습니다. 제20조(신제품 인증의 유효기간 등) ①신제품 인증의 유효기간은 제18조제5항에 따른 공고일 부터 3년으로 하 되, 1차에 한하여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제18조제4항에 따라 신제품 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로서 신제품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이하 "연장신청인" 이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만료일 3월 전까지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또한 신제품통합인증요령 제11조(신제품 인증의 유효기간 등)에도 같은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연장신청서를 제출하면 연장심사절차에 따라 최초 인증시와 같이 현재 시점에서도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을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 중 경제적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인지를 평가하여 인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합니다.

귀사의 경우 신제품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신청기간을 이미 경과하였으므로 연장신청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술표준원 신기술인증지원팀(02-509-728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일본에서 전압이 110V 이고 소비전력은 45W정도 되는 전기보온밥솥을 수입하려고 합니다. 이 제품에 대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받아야 한다면 그 절차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귀하께서 문의하신 "전기보온밥솥"은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에 해당되며, 안전인증은 제조자(외국에 소재한 제조자의 경우에는 국내대리인에 의한 인증신청이 가능)가 받는 것으로, 제품시험과 공장심사에 적합하면 안전인증서를 발급하게 되어 있으며, 아래 안전인증기관 중 이용이 편리한 곳을 선택하시어 인증절차, 비용, 소요기간 등을 협의하여 인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 031)428-7524(경기 군포)
- 산업기술시험원 : 02)860-1366(서울 구로)
- 한국전자파연구원 : 031)679-9591(경기 용인)